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446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위성곤・박정현・허 영 서영교・윤준병・주철현 박희승・이개호・임오경 이해식・이춘석・정준호 송옥주・김한규 의원 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지정유산(사적)인 삼성혈(三姓穴)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(高)・양(梁)・부(夫)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‘탐라 개국 신화’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, 이와 관련한 유・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・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.

이러한 유산 계승・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・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(이하 “삼성혈관련재단”이라 함)에 대한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바, 해당 지원의 실효성을 위하여 삼성혈관련재단에 세제 감면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

취득세와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40조의4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44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2절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4(삼성혈관련재단 지원을 위한 감면) ①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57조의4에 따라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(이하 이 조에서 “삼성혈관련재단”이라 한다)이 재단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② 삼성혈관련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단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③ 삼성혈관련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토지 중 종중이 출연한 토지(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제외한다)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. 이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0.7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유 업무 범위, 종중 출연 토지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삼성혈관련재단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) ① 제4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40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0조의4(삼성혈관련재단 지원을 위한 감면) ①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57조의4제2항에 따라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(이하 이 조에서 “삼성혈관련재단”이라 한다)이 재단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② 삼성혈관련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단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③ 삼성혈관련재단이 과세기준

	일 현재 소유한 토지 중 종중이 출연한 토지(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제외한다)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. 이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0.7로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유 업무 범위, 문중 출연 토지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